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37
----------	-------

발의연월일 : 2026. 4. 15.

발 의 자 : 이만희 · 서천호 · 구자근  
김기웅 · 박덕흠 · 이성권  
박충권 · 김석기 · 유용원  
조배숙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거나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으로,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농업 관련 기업이 아닌 건설기업이나 사모펀드 등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성이 부족한 기업 등이 인수를 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여 매년 과도한 자산이 해당업계로 유출되고, 생산자 보호 노력이나 수급조절 등의 공공기능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치중하여 유통비가 상승하고 독과점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

인을 받도록 하여 농수산물 수급안정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도매시장 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를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매시장 개설자는”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매시장법인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①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u>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u>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u>도매시장 개설자는</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인수 또는 합병을 승인하여야 한다.</p> <p>1. 2. (생략)</p> <p>③·④ (생략)</p>	<p>제23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① ----- ----- -----<u>해당 도매시장 개설자를</u> 거쳐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u>-----.</p> <p>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u>----- ----- ----- -----.</p> <p>1. 2.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